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시다.”



법원행정처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의 사용용도 지정 안내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제4항에 따라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의 사용용도를 불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의 사용용도 지정 1부. 끝.



법원행정처장



수신자 전국법원장(총무과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

법원서기

이승욱

등기사무관

권병철

심의관

김태창

국장

전결
09/09
박정호

협조자 심의관

곽병태

시행 사법등기심의관-4419 (2021.09.09.) 접수 ()

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http://www.scourt.go.kr>

전화 02-3480-1876 /전송 02-599-2743

/ iso100215@scourt.go.kr / 공개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의 사용용도 지정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제4항에 따라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의 사용용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시행 시기: 2021. 9. 24.(일부 등기소 2021. 9. 10.부터 시범운영)
2. 사용용도
 - 법인·부동산등기 전자신청
 - 전자공탁
 -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용도 일부
3. 장래 추가될 사용용도는 별도 공고 예정
4.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은 부여되지 않음
5. 공고 방식: 인터넷등기소에 게시

법 원 행 정 처 장